

의안번호	2207507
의 퇴 인	허성무의원
회 답 일	2025.2.17.
추계번호	25B0271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0조 (기금의 용도)	○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의2. 「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70조 (기금의 용도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안 제70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「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할 경우, 기금 용도의 확대에 따른 기존시설의 확대 또는 신규시설의 추진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본 개정안은 허정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750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, 「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 제18조¹⁾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

1) 제18조 (국가 등의 지원)

① 국가는 기본계획 및 시·도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있도록 규정함

-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규모는 2025년 기준, 2조 6,217억원임
 - (재원별 수입 현황)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수입 3,487억원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수입의 7%를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 1조 3,312억원,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 6,076억원,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,199억원 등
 - (분야별 지출 현황) 온실가스 감축 8,607억원, 저탄소생태계 조성 5,684억원, 공정한 전환 2,077억원, 탄소중립 기반구축 6,857억원, 기금운영비, 예수이자상환, 여유자금운용 등 기타 2,992억원 등

□ 본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「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²⁾ 및 시행계획³⁾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사업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현시점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과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사업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어 추계가 어려움

2) 제5조(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)

-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장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의 의견을 수렴한 후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다만,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제8조에 따른 주민참여
 - 2.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수립
 - 3. 제10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실시
 - 4. 제11조에 따른 소득지원 등 지원
 - 5. 제1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 등 지원
 - 6. 제13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
 - 7. 제14조에 따른 대체산업 등의 지원
 - 8. 제15조에 따른 지역기업 우대
 - 9.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제6조(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)

- 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·도 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참고자료 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

[단위: 용량(MW), 발전량(GWh)]

발전소명(지역)	대수	용량	호기	용량	준공	호기	용량	준공	발전량('23)
삼천포화력(경남)	4	2,120	#3	560	'93	#5	500	'97	11,278
			#4	560	'94	#6	500	'98	
영흥화력(인천)	6	5,080	#1	800	'04	#4	870	'08	22,174
			#2	800	'04	#5	870	'14	
			#3	870	'08	#6	870	'14	
여수화력(전남)	2	669	#1	340	'16	#2	329	'11	3,193
보령화력(충남)	6	3,050	#3	550	'93	#6	500	'94	15,990
			#4	500	'93	#7	500	'08	
			#5	500	'93	#8	500	'08	
신보령화력(충남)	2	2,038	#1	1,019	'17	#2	1,019	'17	11,704
태안화력(충남)	10	6,100	#1	500	'95	#6	500	'02	28,163
			#2	500	'95	#7	500	'07	
			#3	500	'97	#8	500	'07	
			#4	500	'97	#9	1,050	'16	
			#5	500	'01	#10	1,050	'17	
하동화력(경남)	8	4,000	#1	500	'97	#5	500	'00	16,889
			#2	500	'97	#6	500	'01	
			#3	500	'98	#7	500	'05	
			#4	500	'99	#8	500	'05	
삼척그린화력(강원)	2	2,044	#1	1,022	'16	#2	1,022	'17	8,867
당진화력(충남)	10	6,040	#1	500	'99	#6	500	'06	27,197
			#2	500	'99	#7	500	'07	
			#3	500	'00	#8	500	'07	
			#4	500	'01	#9	1,020	'16	
			#5	500	'05	#10	1,020	'16	
북평화력(강원)	2	1,190	#1	595	'17	#2	595	'17	6,067
고성(경남)	2	2,080	#1	1,040	'21	#2	1,040	'21	12,247
신서천(충남)	1	1,018	#1	1,018	'21				3,523
강릉안인(강원)	2	2,080	#1	1,040	'22	#2	1,040	'23	9,985
반월열병합*(경기)	1	83	#1	83	'90				368
대구염색열병합*(대구)	1	73	#1	73	'04				0.7
SGC에너지*(전북)	1	114	#1	114	'08				1,962
새만금열병합*(전북)	2	303	#1	152	'15	#2	152	'15	2,376
금호여수열병합*(전남)	2	264	#1	119	'09	#2	145	'16	1,661
여수열병합*(전남)	1	48	#1	48	'10				358
구미열병합*(경북)	1	97	#1	97	'91				535
부산염색열병합*(부산)	1	19	#1	19	'93				16
김천열병합*(경북)	1	59	#1	59	'13				393
전북집단지너지*(전북)	1	19	#1	21	'92				106
상공에너지*(전북)	1	10	#1	10	'12				40
포천그린에너지*(경기)	1	170	#1	170	'18				1,338
동해화력(무)(강원)	2	400	#1	200	'98	#2	200	'99	1,876
삼척화력(강원)	1	1,050	#1	1,050	'24				—

주: *는 비중양급전(14대/1,259.2MW), (무)는 무연탄(2대/400MW)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[참고자료 2]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

(단위: MW)

연도	전환 계획			
	발전설비	내용	이전 지역	설비용량
2025	태안#1	LNG 전환	구미	500
	태안#2	LNG 전환	여수	500
2026	하동#1	LNG 전환	안동	500
	보령#5	LNG 전환	보령	500
	보령#6	LNG 전환	함안	500
	삼천포#3,4	LNG 전환	(미정)	1,120
2027	하동#2,3	LNG 전환	하동	1,000
	삼천포#5	LNG 전환	(미정)	500
2028	하동#4	LNG 전환	하동	500
	삼천포#6	LNG 전환	(미정)	500
	태안#3	LNG 전환	공주	400
2029	동해#1,2	LNG 전환	미정	400
	당진#1,2	LNG 전환	(호남)	1,000
	태안#4	LNG 전환	(미정)	500
2030	당진#3,4	LNG 전환	용인	1,000
2031	하동#5,6	LNG 전환	용인	1,000
2032	태안#5,6	LNG 전환	용인	1,000
2033	—	—	—	—
2034	영흥#1,2	LNG 전환	(미정)	1,600
2035	—	—	—	—
2036	당진#5,6	LNG 전환	(미정)	1,000

주: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첨단산업 전력공급계획 기준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